#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30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윤건영·박지원·이성윤

이기헌 • 전현희 • 한병도

백승아 · 염태영 · 김병기

이정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수욕장 및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구 또는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사례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 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47조제2항 등).

#### 법률 제 호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해수욕장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행위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를 "각 호 (제12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2조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 는 운용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정 아 개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해수욕장 이용자의 생명 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 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행위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1. 제22조제1항제12호의2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 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③ -----각 호(제12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는 제외한다)-----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